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2 선고 2019가합6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래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선

**변론 종결**2020. 3. 19.

**판결 선고**2020. 4. 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12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125,363,030원, 피고 D은 84,100,1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버섯종균배지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실질적인 사주인 E은 2018. 5. 12. F와 사이에 안성시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I조합(대표자 이사장 F)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E과 F는 2018. 5. 22. 다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 ● 부동산의 표시

안성시 J, K 토지 및 건물

안성시 G, H 토지 및 건물

#### ● 매매대금: 30억 원, 계약금 3억 원, 잔금 27억 원

[특약사항]

1. 계약금은 3억 원으로 한다.

2. E은 원고를 부동산이전등기하면서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한다(매수인은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동 법인을 사용한다).

3. 잔금 27억 원은 기존 대출을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매도인 E

매수인 피고 B

다. 피고 B가 2018. 6. 2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7. 4. 그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예금계좌로부터, ① 2018. 8. 23.부터 2019. 8. 3.까지 사이에 피고 B의 예금계좌로 128,240,000원, ② 2018. 9. 4.부터 2019. 8. 20.까지 사이에 피고 C의 예금계좌로

125,363,030원, ③ 2018. 9. 5.부터 2019. 2. 28.까지 사이에 피고 D의 예금계좌로

84,100,158원이 각 송금되었다(이하 위 각 송금된 돈을 '이 사건 각 돈'이라 한다).

마. 피고 B가 2019. 8. 21.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9. 8. 22. 그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기화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들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각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2018. 5. 22.자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인 F가 원고 법인을 양수한 이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의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피고들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F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각 계좌로 이 사건 각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송금받아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장구

판사황경환

판사김은경